

수강 신청 규정

제 정 : 1983. 05. 10.
전부개정 : 2020. 09. 23.

제9조(예외적 학점포기제 허용)

이미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. 단,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F등급의 교과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.